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제도화〉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03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15호)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67호)
- 국회의장 의견제시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안)	1
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안)	4
I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안)	7
IV. 국회의장 의견제시	9
V. 국회의장 의견제시검토의견	12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호영 · 이용우 · 김태선 · 이학영 · 박희승 · 이성윤
윤준병 · 한병도 · 위성곤 · 이용선 · 임미애 · 서삼석 의원(12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

다. 회 부 일 : 2025. 10. 2.

※ 의안번호 : 13403

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절차나 공청회·청문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옴.

그러나 청원 제도는 주로 서면 심사에 그치거나, 공청회는 소수의 전문가와 단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요 사회·경제 주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사회의 복잡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현행 제도로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 의견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회는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이하 “사회적대화기구”라 함)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함(안 제126조의2 신설).

나. 사회적대화기구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며, 해당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 시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고,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6개월 내

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6조의4 신설).

라. 사회적대화기구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대화기구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126조의5 신설).

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 · 김준혁 · 윤종균 · 박홍근 · 이성윤 · 김남근
이기현 · 박상혁 · 안태준 · 조인철 · 이용우 · 이훈기
박홍배 · 오세희 · 김동아 · 박용갑 · 김교홍 의원(17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

다. 회 부 일 : 2025. 10. 2.

※ 의안번호 : 13415

2.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생 · 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대적 과제들은 특정 정부나 개별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층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지혜를 모으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임.

그동안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 사회 · 경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임.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국회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 또한, 국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합의는 곧바로 법률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의 과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입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따라서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장이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비롯하여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변화한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복합위기·미래문제 대응 및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등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함(안 제126조의2 신설).

다. 의장은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소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함. 또한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등에 이송할 수 있으며,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라.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지원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안 제126조의4 신설).

Ⅲ.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 영 · 문진석 · 김남근 · 박상혁 · 박홍배 · 김동아
위성곤 · 허종식 · 박용갑 · 김태선 · 정준호 · 주철현
소병훈 · 박지원 · 장철민 · 맹성규 · 김병기 · 박수현
김승원 · 김준혁 · 부승찬 · 진성준 · 서삼석 · 최혁진 의원(24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

다. 회 부 일 : 2025. 10. 10.

※ 의안번호 : 1346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었을 때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대화 결과를 소관 위원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맞추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의장 직무를 추가함.

이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기능과 입법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신설).

IV.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의장은 2025. 11. 10.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음.

1. 제안이유

사회적 대화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소통하는 과정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등이 정책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우리의 경우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와 2018년 이를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음.

그러나 “복합위기 시대”라고 표현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부, 정당, 이해관계집단 및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여 입법, 예산,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우리 국회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실질적인 기능에서도 법률안 입안·발의와 심사 과정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 논의를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장(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정책 결정의 참여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입법과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해당 의제별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대화 추진 결과가 위원회 및 정부 등에 전달되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를 통해 입법 및 중요 정책에 대한 국가 및 사회 전반의 소통과 수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회적대화 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등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함(안 제126조의2 신설).

다. 의장은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공표하며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소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함. 또한 위원회는 정부 등에서 결과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정부 등에 이송할 수 있고, 정부 등은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라.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지원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안 제126조의4 신설).

V.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배경

사회적 대화는 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조직적 대표성을 갖는 집단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부분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법제도가 수립·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대화, 협의, 자문 및 의사결정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파트너십과 협상을 통해 갈등과 쟁점을 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으나, 해당 회의체의 한계로 노사단체의 이탈·불참으로 인한 반복적인 파행, 과반을 차지하는 정부·공익위원 비율에 기인하는 대표성 부족, 정부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구속력의 부재로 입법·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²⁾

더욱이, 우리나라는 양극화·불평등 등 기존의 사회문제가 심화·다변화될 뿐만 아니라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복합위기가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주체들

1) 정홍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2024. 12., p.4.

2)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자료집, 2024. 10., 정홍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2024. 12.,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

의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과 의장 의견제시는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을 두도록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운영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면서, 3대 의제 및 9대 과제 실현³⁾을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신설·운영을 촉구한 바 있음.

3) 3대 의제: 경제적 평등, 경제적 자유, 공정한 경제

9대 의제: 부동산, 노동, 사회안전망, 규제, 혁신성장, 교육, 공정경제, 동반성장, 재정운용

2. 국회의 사회적 대화 추진경과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상설적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사안별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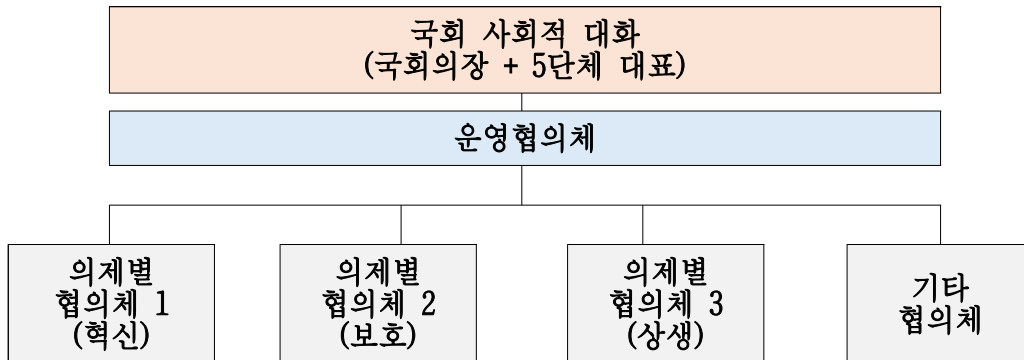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및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숙의된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금의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⁴⁾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사회·경제 5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⁵⁾,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 2025년 5월~6월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방안을 합의하고 의제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의제별 협의체(혁신 의제, 보호 의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2025년 10월 현재 상생 의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임.

4) 한인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64호, 2024. 7..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6년만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표-1]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기본구조



자료: 국회사무처

[표-2] 운영협의체 및 의제별 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운영협의체	의제별 협의체 1 (혁신)	의제별 협의체 2 (보호)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인원	사회경제5단체(10), 사회적 대화 전문가(2), 국회소속기관 등 19명	사회경제5단체(5), 의제별 전문가(2) 등 10명	사회경제단체(5), 의제별 전문가(2) 등 10명
활동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관련 총괄·조정	총 10회 내외 개최, 최대 6개월간 운영 후 합의문 채택 예정	

자료: 국회사무처

3. 개정안의 주요내용

세 건의 개정안과 국회의장 의견제시는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안호영의원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의 의안 심사에 활용하게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함.

문진석의원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사회적 대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의 의안 심사에 활용하게 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함. 또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장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다음으로, **허영의원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사회적 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의 안건 처리 시 활용하도록 하

고, 위원회는 의결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3개월(최장 5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진석의원안과 동일하게 의장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의견제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사회적 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의 의안 심사에 활용하게 하고, 위원회 의결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3개월(최장 5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진석·허영의원안과 같이 의장이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신설함.

이들 개정안은 조직명,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직을 구성할 때 사회·경제 분야의 주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도록 하고, 사회적 대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존중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표-3] 개정안별 국회 사회적대화 관련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 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설치조직		사회적대화기구	사회적대화위원회	사회적대화위원회	사회적대화위원회
구성원칙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			
구성방식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구성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	(안호영·문진석의원안과 동일)
활 용	국 회 내 부	(의장) 결과보고서 공표 및 소관 위원회에 송부 → (위원회) 해당 보고서 존중하여 의안 심사	(의장) 결과보고서 의원 배부 및 소관 위원회에 송부 → (위원회) 해당 보고서 존중하여 의안 심사* * 결과보고서의 내용취지를 반영하여 의안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우 이를 심사보고서나 의안 등에 표기	(의장) 결과보고서 공표 및 소관 위원회에 송부 → (위원회) 해당 보고서 존중하여 안건 처리	(문진석의원안과 동일)
	국 회 외 부	(의장) 필요 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송 → (정부·행정기관 등)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리 결과 의장에게 제출	(의장) 필요한 경우 이송 → (정부·행정기관 등)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리 결과 의장에게 제출	(위원회)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로 처리 요구 → (정부·행정기관 등) 요구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이내 처리 결과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로 이송 → (정부·행정기관 등) 이송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이내 처리 결과 위원회에 제출
기타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참여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장의 노력의무 규정		

4. 내용별 검토

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세 건의 개정안과 의장 의견제시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직(사회적대화기구 또는 사회적대화위원회)을 두고, 동 조직 구성 시 원칙적으로 사회·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주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를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안호영·문진석의원안과 의장 의견제시는 동 조직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 반면, 허영의원안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표-4] 개정안별 국회 사회적대화 구성 관련 내용 비교

구 분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의장 의견제시	허 영의원안
조직명	사회적대화기구	사회적대화위원회	사회적대화위원회
구성원칙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		사회·경제 각 부문을 대표하는 주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자를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
구성방식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

[표-5] 개정안 조문대비표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 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신설 제9장의2 사회적 대화 제126조의2(사회적 대화기구) ① 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각종 상시적·일시적 협의체 등의 기구(이하 “사회적대	신설 제9장의2 사회적 대화 제126조의2(사회적 대화 추진) ① 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사회적대화를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신설 제9장의2 사회적 대화 제126조의2(사회적 대화위원회) ①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③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주	신설 제9장의2 사회적 대화 제126조의2(사회적 대화 추진) ① 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 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화기구”라 한다) 를 국회에 둔다. ③ 사회적대화기구 는 사회·경제 의 주요 주체 또 는 의제별 당사 자의 이해를 대 변하도록 구성하 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그 밖의 사회 적대화기구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사회적대화기구 의 사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국 회규칙을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을 둔다.	이 경우 사회적 대 화 위 원 회 는 사 회 · 경 제 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 의 이해를 대변 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 협의 하여 위촉한다. ③ 사회적대화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자율성 은 최대한 존중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 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4(사회 적 대화 지원체 계) ①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조직·지	요 주체 또는 관계 이해당사 자를 균형적으 로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 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④ 사회적대화 위원회의 운영 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 등 지 원체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 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도록 구 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의장이 위 촉한다. ③ 사회적대화위 원회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이외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126조의4(사회 적대화 지원체 계) ① 국회는 사회적대화위원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조직·지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② 사회적대화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대화기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원방안, 관계 기관에 대한 각종 협조 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원방안, 관계기관에 대한 각종 협조 요청,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회적대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기의 개정안과 의장 의견제시는 국회에 사회적대화기구(안호영의원안) 또는 사회적대화위원회(문진석·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가 특정 정책의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한다는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여전히 행정부의 주도성이 적지 않은 상황임.⁶⁾⁷⁾

6) 정혜윤 외 7인, 「한국노동정치의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국회미래연구원, 2023. 12., p.35~38.

7) 행정부의 강한 주도성이 잘 드러난 사례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들 수 있음.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6개월)에 합의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중 3인이 불참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이후 위원 해촉 등을 거쳐 8개월 만에 의결에 이룸. 당시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정부가 탄

이러한 점과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는 곳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직접 입법·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기구가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화 회의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상기와 같이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조직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거나(안호영·문진석 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허영의원안) 의장이 사회적 대화 조직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체의 구성방식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둘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대화 조직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무원의 배치,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의 사항은 안호영의원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측면이 있음.

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해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에 부쳐 답정너식 밀어 붙이기라고 비판하였음(“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했지만 의결은 못해…발목잡힌 경사노위”, 연합뉴스, 2019. 3.,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최종 의결”, 한국경제TV, 2019. 10.).

나. 사회적 대화 결과의 활용

세 건의 개정안과 의장 의견제시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경과 및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나 정부·행정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별로 사회적 대화의 결과보고서 활용절차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6] 개정안별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 활용 관련 내용 비교

구 분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공통		사회적대화 결과 도출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활 용	국 회 내 부	(의장) 결과보고서 공표 및 소관 위원 회에 송부 → (위원회) 해당 보고서 존중하여 의안 심사	(의장) 결과보고서 의원 배부 및 소관 위원회에 송부 → (위원회) 해당 보고서 존중하여 의안 심사* * 결과보고서의 내용취지 를 반영하여 의안을 심사 하거나 위원회안으로 제 안한 경우 이를 심사보고 서나 의안 등에 표기	(의장) 결과보고서 공표 및 소관 위원 회에 송부 → (위원회) 해당 보고서 존중하여 안건 처리	(문진석의원안과 동일)
	국 회 외 부	(의장) 필요 시 처 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송 → (정부·행정기관 등) 이송받은 날부 터 6개월 이내 처 리 결과 제출	(의장) 필요한 경 우 이송 → (정부·행정기관 등) 이송받은 날부 터 6개월 이내 처 리 결과 제출	(위원회) 처리함이 적 정하다고 판단한 경 우 의결로 처리 요구 → (정부·행정기관 등) 요구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 처 리 결과 보고(2개월 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 장 가능)	(위원회)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결로 이송 → (정부·행정기관 등) 이송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 처 리 결과 제출(2개월 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 장 가능)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신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의 보고 및 심사) ① 사회적대화 기구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면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 시에 해당	신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보고·처리 등) ① 사회적대화 위원회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공표한	신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처리) ① 사회적대화 위원회는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그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관련 안전을 처리할 때에 그 내용·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	신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 보고·처리 등) ① 사회적대화 위원회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공표하며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u>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u> <u>제126조의4(사회적대화 결과의 이송)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해당 보고서를 이송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다.</u> <u>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u> <u>④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용·취지를 관련 의안 심사에 반영한 경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한 경우 그 반영 사항을 해당 심사보고서 또는 의안 등에 표기한다.</u> <u>⑤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그 처리 결과를 이송받은 날부터 6개</u>	<u>하는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에 그 의결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행정기관 등의 처리 및 위원회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27조의 3⁸⁾을 준용한다.</u>	<u>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용·취지를 관련 의안 심사에 반영한 경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한 경우 그 반영 사항을 해당 심사보고서 또는 의안 등에 표기한다.</u> <u>④ 위원회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결과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u> <u>⑤ 결과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그 처리 결과(이송받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송받은 날부터 3개</u>

안호영의원안	문진석의원안	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u>월 내에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월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⑥ 정부, 행정기관 등은 제5항에 따 른 기간 내에 위 원회에 처리결과 를 제출하지 못하 는 때에는 중간보 고를 하고 제출기 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은 2개월의 범위 에서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기의 개정안과 의장 의견제시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의 진행경
과 및 결과 등을 소관 위원회나 정부·행정기관 등의 입법·정책 과정
에서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대화기구(안호영의

- 8) 「국회법」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원안) 또는 사회적대화위원회(문진석·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가 협의 또는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의장이 직권으로(안호영·문진석의원안) 혹은 위원회의결(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로 정부, 행정기관 등에 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당 처리 요구 절차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전자의 경우 국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회는 회의체에서 기인하는 특성으로 인해 그 의사를 형성할 때 ‘의결’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며, 현행법에서도 국회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표-8] 국회관계법률상 정부에 대해 요구 시 필요한 국회 절차

요구 사항	필요 절차
결산 시정요구(국회법 §84②)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 검토결과 송부(국회법 §98의2⑤) 국회 채택 청원 처리 요구(국회법 §126②)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국회법 §127의2) 국감조사 결과 시정요구(국정감조사법 §16④)	본회의 의결

요구 사항	필요 절차
행정입법(부령) 검토결과 통보(국회법 §98의2⑦)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청원 조사 요구(국회법 §127의3)	위원회 의결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국회법 §128①, 국정감조사법 §10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청문회, 국정감·조사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도 가능)
「국회증감법」 상 범죄 고발(국회증언감정법 §15-2)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

둘째,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의 결과보고서 처리 결과 제출 기한을 6개월(안호영·문진석의원안) 또는 최장 5개월(허영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내용, 처리기한 설정의 필요성·적절성과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체계는 감·조사, 수사에 관한 사항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청원·결산·국정감사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여 정부가 국회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함.

[표-9] 국회관계법률상 국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처리기한

요구 사항	처리기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국회법 §127-2)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청원 조사 요구(국회법 §127-3)	최장 5개월 내 결과 보고 (3개월 + 2개월)
「국회증감법」 상 범죄 고발(국회증언감정법 §15-2)	최장 4개월 내 처분결과 보고 (2개월 + 2개월)
결산 시정요구(국회법 §84②) 행정입법(부령) 검토결과 통보(국회법 §98-2⑧) 국회 채택 청원 처리 요구(국회법 §126②) 국감조사 결과 시정요구(국정감조사법 §16④)	지체 없이 처리 결과 보고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 검토결과 송부(국회법 §98-2⑥)	처리 결과 제출(기한 없음)

다. 국민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참여 촉진을 위한 의장의 의무
(문진석·허영의원안 및 국회의장 의견제시)

문진석·허영의원안과 국회의장 의견제시는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표-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문진석의원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허영의원안
제 10 조 (의 장 의 직무) (생 략) <신 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 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 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국회에서 국민 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 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 함한 다양한 참여를 촉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9)은 국회의 조직과 의사(議事)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국회의장의 직무도 ① 국회를 대표하고, ② 의사를 정리하

9) 「국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며, ③ 질서를 유지하고, ④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률에 국회와 국회의장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의장 의견제시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곳이어야 하며, 국회의장이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우리 헌법¹⁰⁾에서 선언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게 국회가 운영되어야 함을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취지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10)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